제16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8. 10.

□ 안건명 :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안건에 대한 제167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환경영향조사 부분
 - 환경영향 부분 중 인근 주거지역 및 주상복합건물과의 소음영향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반포대교 및 잠수교가 한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수 등 수경시설 도입, 목적시설물 이용객 또한 주변 한강공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한강의 수질오염 방지 등 해당사업과 밀접한 환경영향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함.
- 2.2.11. 기타조사에 추가 반영 필요
 - 5. 기존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내진설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를 검토하여 손상현황 및 내구성 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한강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시행되므로 하천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검토 필요
 - 하천법령,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하천설계 기준해설(한국수자원 학회) 추가 필요

붙임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 안건명: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고
	1. 과업의 법위 및 규모 (1) "1.3.2 과업의 범위 및 규모"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 부분이 공모 지침서의 필수 제안범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함 과업내용서 잠수교 보행교 전환 (연장 795m, 폭원 18m) 잠수교 주변 접근로 및 연계공간, 수상공간 등 - 공모지침서의 필수 제안범위 반포대교 남단 및 북단의 연결교량의 상당부분을 포함함	1쪽
	(2)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위치도와 공모지침서의 위치도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과업내용서에 공모지침서의 제안 위치도를 추가하는 것 검토 필요함.	26쪽
토목	2. "제6절 보행교 계획 및 구조물 설계" 부분 지형도 축척 수정 필요 : 서울시(지방자치단체의 도심지 관리 지형도)의 수치지형도의 기본 축척은 1:1,000이며, 아래 1/25,000 ~50,000 등은 고속도로 등과 같이 광역범위를 대상으로 개략 검토하는 수준이므로 본 과업에 적합하지 않음. (1) 3.6.1 보행교 계획	19쪽 20쪽
	 1.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 선형(노선)을 설정하고, 선형 별로 검토한 후 최적 선형을 결정한다. 2.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선형을 선정하고, 기존 도로 및 한강 둔치 등과의 접속을 검토한다. 	
	 (2) 3.6.2 선형(종·평면) 설계 1.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후보 선형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고 최적(안)을 결정한다. 2. 최적(안)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선형(노선) 설계를 계획하고, 	
	(3) 3.6.4 개략설계도 2. 개략설계는 1/1000~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 하며, ~ 생략~	

	3. 환경영향조사 부분	
	(1) 환경영향 부분 중 인근 주거지역 및 주상복합건물과의 소음 영향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반포대교 및 잠수교가 한강상에	15쪽
	위치하고 있으며 분수 등 수경시설 도입, 목적시설물 이용객 또한 주변 한강공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한강의 수질오염	18쪽
	보안 구선 안성능천과의 선세가 될구식이므로 안성의 구설오림 방지 등 해당사업과 밀접한 환경영향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함.	
	4. 주민의견 수렴 부분	
	(1)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본 사업과 크게 관련없는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으므로 검토 후 수정 필요함.	14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147
	5. 목차 (1) 과업내용서의 본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목차 일부 수정 필요 제6절 교차로 운영계획 및 구조물 설계19	목차
	 6. 최종 성과품 (1) "4.4.1 최종 성과품"의 종류 중 조감도는 A3×5매로 제시되어 있음. A3로 작성된 1 첫을 5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A3로 5컷을 작성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25쪽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8월 9일

○ 안건명: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토목구조	 1. 1.6.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반영 4. 현재 구조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추후 인수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유관부서(교량안전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공사 완료 후에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설계,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2.2.11 기타 조사에 추가반영 5. 기존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내진설계,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를 검토하여 손상현황 및 내구성 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3.3.3 기타사항에 추가 4. 본 대상지역의 교통차단시 우회하는 교통량에 대한 예측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8월 9일

○ 안건명: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토목시공	 잠수교의 시,종점부(강남・북부)에서 기존 차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체 교통우회로 및 새로운 이동경로에 대한 선별적 설문을 통해 최적의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서비스 등급 저하 방지 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강수위 급상승 시 출입 통제 방안 및 위급 상황 시 교량 상 대피공간 확보방안 검토 필요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8월 9일

○ 안건명: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수자원	 (P.9) 1.5.2 적용기준 및 시방서 추가 (추가)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 국토교통부 (추가) 하천설계기준해설 - 한국수자원학회 (P.11) 1.5.3 관련법령 및 기준 추가 (추가) 하천법령 (P.16) 2.2.8 배수시설 조사 추가 한강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상 보행교 설치 지점의 유량, 수위, 유속 등 수리·수문량 및 장래하상변동을 조사한다. (P.20) 3.6.3 구조물 설계 수정 한강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교량의 적정 형하고, 경간장, 하상보호공 등을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8월 9일

○ 안건명: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고
분 성	점 토 의 견 1. 제1장 총칙, 제3절 과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 항평가 여부 검토)를 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로 수정 필요 - 유지관리 보고서 검토(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2. 제1장 총칙, 제4절 일반사항 - 6)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27호 및 28호 서식) 3. 제2장 조사업무,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대체도로 건설은 본 과업과 관련 없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4. 제3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제3절 교통영향(보행통행 포함) 및 평가 과업 범위 수정 필요 - 과업단계상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수요예측(보행통행 포함) 및 영향분석으로 수정 필요 5. 1.4.5 심의 및 자문 내용 추가 -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9029(2023.5.16.)호)에 따라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여 디자인 품질향상 방향과 관련 내용이 설계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한강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시행되므로 하천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검토 필요 - 하천법령,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하천설계 기준해설(한국	비고
	관련 내용이 설계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한강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시행되므로 하천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검토 필요	

	 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관련 기준 등 수정 -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조례 시행규칙(별표1)은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 43.2. 기타에서 해당 용역은 기술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 필요 - 4.4.2 usb 작성기준에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은 상단에 제시한 전산파일명과 상이하므로 수정 필요 	
	 9. 관련 기준 현행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2.12.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3.6.29.)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8월 9일